

##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30100004]

[www.bongousse.com](http://www.bongousse.com)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3.01.30]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12.30]

## 봉구스밥버거

### 정보공개서

(주)부자이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

[(주)부자이웃]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사업자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가맹점사업자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391, 6층 1호(창동, 네네빌딩) ]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1661-5094 ]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2-2051-5094 ]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영업관리팀 1661-5094 ]

# 목 차

I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6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6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7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봉구스밥버거]라 합니다)의 내용 .....	7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7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8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9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9
II . 가맹본부의 [봉구스밥버거] 가맹사업 현황 .....	11
1. [봉구스밥버거]를 시작한 날 : 2011년 10월 10일 .....	11
2. [봉구스밥버거] 연혁 .....	11
3. [봉구스밥버거] 업종 .....	11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봉구스밥버거]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12
5. 바로 전 3년간 [봉구스밥버거] 가맹점 수 .....	12
6. [봉구스밥버거]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13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13
8.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14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15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18
11. 가맹금 예치 .....	18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19
III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20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20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20
3. 형(刑)의 선고 .....	20
IV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21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21
2. 영업 중의 부담 .....	26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27

<b>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b>	<b>30</b>
1. 물품 구입 및 임차 .....	30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1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32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36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38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39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42
8. 경영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44
9. 광고 및 판촉 활동 .....	46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47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7
<b>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b>	<b>50</b>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요약 .....	50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51
<b>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b>	<b>52</b>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52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53
3. 경영활동 자문 .....	53
4. 신용 제공 등 내역 .....	53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53
<b>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b>	<b>54</b>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54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54
3. 교육·훈련의 주체 .....	55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55
<b>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b>	<b>56</b>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56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	56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	56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가맹점사업자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가맹점사업자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주)부자이웃	봉구스밥버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391, 6층 1호(창동, 네네빌딩)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3.05.07.	2013.05.01.	현광식	1661-5094	02-2051-5094
	법인등록번호	135811-0230317	사업자등록번호	124-87-40615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대표이사)	현광식/ (주)부자이웃	봉구스밥버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391, 6층 1호(창동, 네네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현광식	1661-5094	02-2051-5094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현광식/ (주)혜인식품	네네치킨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391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현철호, 현광식	02-930-6665	02-6918-6152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특수관계인 (이사)	현철호/ (주)부자이웃	봉구스밥버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391, 6층 1호(창동, 네네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현광식	1661-5094	02-2051-5094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특수관계인 (이사)	현철호/ (주)혜인식품	네네치킨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391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현철호, 현광식	02-930-6665	02-6918-6152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봉구스밥버거]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봉구스밥버거	
상 호	봉구스밥버거 00점	가맹본부는 보통 해당 지역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b>봉구스밥버거</b>	서비스표 등록번호: 40-1621226
	 <b>봉구스밥버거</b>	서비스표 등록번호: 40-1376393
	 Bon Gousse 봉 구 스 밥 버 거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264728
	 <b>봉구스밥버거</b> BON GOUSSE	서비스표 출원번호: 40-2024-0016429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원, 부가세 미포함)

연 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6,782,043	1,723,765	5,058,278	12,606,001	1,223,683	1,084,279
2022년	9,462,833	2,336,729	7,126,104	14,503,475	2,976,044	2,067,825
2023년	11,085,998	1,980,507	9,105,491	14,542,653	2,984,729	2,979,386

그 근거자료는 [별지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현광식	대표이사	2005.01.~2010.02.	(주)네네치킨 이사	가맹점 및 지사관리
			2006.04.~2010.02.	(주)혜인식품 이사	가맹점 및 지사관리
			2010.02.~현재	(주)혜인식품 대표이사	가맹점 및 지사관리
			2018.09.~현재	(주)부자이웃 대표이사	회사업무총괄
	현철호	이사	2005.03.~2010.03.	(주)네네치킨 대표이사	가맹점 및 지사관리
			2006.01.~현재	(주)혜인식품 대표이사	가맹점 및 지사관리
			2018.09.~2018.11.	(주)부자이웃 대표이사	회사업무총괄
			2018.11.~현재	(주)부자이웃 이사	가맹점 관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1	12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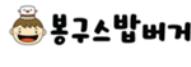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 계	상호/이름	구 분	기 간	사업내용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현광식	다른 가맹본부 (주)해이식품 대표이사로 재직	2006.04.~현재	네네치킨 (등록번호: 20080100061)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이사)	현철호	다른 가맹본부 (주)해이식품 대표이사로 재직	2006.01.~현재	네네치킨 (등록번호: 20080100061)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 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Bon Gousse 봉 구 스 맘 버 거 (상표권)	가맹점 상호로 사용	출원일 2012.03.29.	출원번호 41-2012-0010894	주식회사 부자이웃	2033.07.24.
		등록일 2013.07.24.	등록번호 41-0264728		
 (상표권)	가맹점 상호로 사용	출원일 2017.09.19.	출원번호 40-2017-0118956	주식회사 부자이웃	2028.07.10.
		등록일 2018.07.10.	등록번호 40-1376393		
 (상표권)	가맹점 상호로 사용	출원일 2019.06.13.	출원번호 40-2019-0091252	주식회사 부자이웃	2030.07.02.
		등록일 2020.07.02.	등록번호 40-1621226		
Bon Gousse (상표권)	가맹점 상호로 사용	출원일 2011.12.06.	출원번호 41-2011-0039042	주식회사 부자이웃	2032.12.11.
		등록일	등록번호		

		2012.12.11.	41-0246799		
<b>봉구스</b> (상표권)	가맹점 상호로 사용	출원일 2013.11.14.	출원번호 40-2013-0076070	주식회사 부자이웃	2024.08.25.
		등록일 2014.08.25.	등록번호 40-1055262		
밥버거 제조방법 및 제조장치 (특허권)	가맹점 메뉴제조 시 사용	출원일 2012.11.06.	출원번호 10-2012-0124537	주식회사 부자이웃	2032.11.06.
		등록일 2013.07.24.	등록번호 10-1291375		
밥버거 제조틀 및 이를 이용하는 밥버거 제조방법 (특허권)	가맹점 메뉴제조 시 사용	출원일 2014.02.27.	출원번호 10-20140023041	주식회사 부자이웃	2034.02.27.
		등록일 2016.02.23.	등록번호 10-1598685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가맹본부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s://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I. 가맹본부의 [봉구스밥버거] 가맹사업 현황

1. [봉구스밥버거]를 시작한 날 : 2011년 10월 10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1년 5월 30일)

### 2. [봉구스밥버거]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봉구스밥버거	봉구스밥버거	오세린	2011.10.~2013.0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40-1 성은빌딩 6층
(주)부자이웃	봉구스밥버거	오세린	2013.05.~2015.0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40-1 성은빌딩 6층
(주)부자이웃	봉구스밥버거	오세린	2015.05.~2016.06.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8길 15, 4층 (역삼동, 흥우빌딩)
(주)부자이웃	봉구스밥버거	오세린	2016.06.~2018.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2길 16-9, 1층(서교동, 북앤드빌딩) (주)부자이웃
(주)부자이웃	봉구스밥버거	현철호 현광식	2018.09.~2018.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2길 16-9, 1층(서교동, 북앤드빌딩) (주)부자이웃
(주)부자이웃	봉구스밥버거	현광식	2018.11.~2020.05.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2길 16-9, 1층(서교동, 북앤드빌딩) (주)부자이웃
(주)부자이웃	봉구스밥버거	현광식	2020.05.~현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391, 6층 1호(창동, 네네빌딩)

### 3. [봉구스밥버거] 업종

영업표지	업 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봉구스밥버거	기타외식	밥버거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봉구스밥버거】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516	516		501	501		489	489	
서울	69	69		64	64		64	64	
부산	30	30		30	30		29	29	
대구	17	17		17	17		18	18	
인천	21	21		19	19		20	20	
광주	16	16		17	17		18	18	
대전	19	19		20	20		19	19	
울산	14	14		14	14		15	15	
세종	3	3		3	3		1	1	
경기	145	145		141	141		139	139	
강원	19	19		19	19		18	18	
충북	23	23		22	22		20	20	
충남	35	35		31	31		30	30	
전북	28	28		29	29		28	28	
전남	22	22		19	19		17	17	
경북	18	18		17	17		16	16	
경남	34	34		36	36		35	35	
제주	3	3		3	3		2	2	

#### 5. 바로 전 3년간 【봉구스밥버거】 가맹점 수

(단위: 개)

연 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547	23	0	54	17	516
2022년	516	24	1	38	19	501
2023년	501	35	0	47	18	489

## 6. [봉구스밥버거]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봉구스밥버거]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 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특수관계인(대표이사)	(주)헤이식품 /현광식	네네치킨	20080100061	치킨	1,060/0	1,011/0	951/0
특수관계인(이사)	(주)헤이식품 /현철호	네네치킨	20080100061	치킨	1,060/0	1,011/0	951/0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 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전체	489	95,830	8,271	483,382	106,332	10,003	577	462곳 산정	
서울	64	107,898	10,966	483,382	55,005	15,954	2,212	62곳 산정	
부산	29	92,235	8,109	418,952	35,000	14,263	633	28곳 산정	
대구	18	102,884	9,346	202,790	20,654	10,601	1,487	17곳 산정	
인천	20	123,517	10,196	386,103	28,658	22,122	1,802	16곳 산정	
광주	18	108,427	10,202	403,853	41,647	31,756	2,437	18곳 산정	
대전	19	85,748	7,077	205,847	26,125	13,608	1,422	19곳 산정	
울산	15	81,189	5,912	146,651	20,239	35,085	1,529	15곳 산정	
세종	1	-	-	-	-	-	-	5곳 미만	
경기	139	99,109	8,977	380,628	106,332	17,037	847	131곳 산정	
강원	18	87,271	7,576	214,792	23,639	20,533	2,578	16곳 산정	
충북	20	74,072	5,765	141,296	15,625	31,341	1,865	20곳 산정	

충남	30	90,921	7,766	278,320	34,399	10,003	1,320	29곳 산정
전북	28	109,847	6,698	470,690	72,616	12,883	577	27곳 산정
전남	17	77,536	6,365	198,751	18,857	28,142	1,761	17곳 산정
경북	16	112,053	9,958	305,234	31,233	23,485	1,013	14곳 산정
경남	35	61,598	5,416	131,001	14,845	12,550	633	30곳 산정
제주	2	-	-	-	-	-	-	5곳 미만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단, 타사 POS를 사용하거나 샵인샵 매장에 해당하는 등 POS 매출 확인이 어렵거나 가맹점 매출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 분석 자료에 따른 당사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5%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 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며,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가맹점 등 27곳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가맹점사업자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가맹본부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주)부자이웃으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봉구스밥버거]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일)

연 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489	2,661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봉구스밥버거]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서울남부지역 (서울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경기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주)다올에프앤씨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산업로50번길 12-16(서운동)		
서울북부지역 (서울 노원구, 은평구, 성북구, 마포구, 광진구 등, 경기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등, 강원 철원군)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추상호	032-556-4479		37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01.01 ~ 2024.12.31	○	○	×
	서울북부지사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중앙로 164-8		
경기동부지역 (서울 송파구, 강동구, 경기 성남시,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구리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정순덕	031-879-9072		52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01.01 ~ 2024.12.31	○	○	×
	(주)신안씨앤디	경기도 하남시 초광로 73		
경기서부지역 (경기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군포시, 오산시, 의왕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주홍로	02-476-4470		30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01.01 ~ 2024.12.31	○	○	×
	(주)보다패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신백길 129-20		
경인지역 (인천 전역, 경기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방홍식	031-377-3533		54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02.01 ~ 2024.12.31	○	○	×
	(주)경인큰푸드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산업로50번길 12-16, 1층 일부호(서운동)		
경인지역 (인천 전역, 경기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장민영	032-554-4479		48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01.01 ~ 2024.12.31	○	○	×

강원지역 (강원 전역 (철원군 제외), 충북 제천시, 단양군)	(주)선인식품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용수골길 80, 1동 1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우광명	033-734-4474		2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01.01 ~ 2024.12.31	○	○	×
충북북부지역 (충북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경기 안성시)	(주)선인식품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용수골길 80, 1동 1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우광명	033-734-4474		8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01.01 ~ 2024.12.31	○	○	×
대전청주지역 (대전 전역, 충북 청주시,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주)티에이치에프앤비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팔결로 90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태훈	043-213-4479		30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01.01 ~ 2024.12.31	○	○	×
광주전남지역 (광주 전역, 전남 목포시, 나주시, 무안군, 해남군, 화순군, 고흥군 등)	(주)케이제이에프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483번길 35(용두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경환	062-464-6665		28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02.01 ~ 2024.12.31	○	○	×
충남지역 (충남 전역, 세종 전역)	(주)동화씨엠	충청남도 아산시 무궁화로 43(초사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사장환	041-542-4470		3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01.01 ~ 2024.12.31	○	○	×
전북지역 (전북 전역, 전남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티비(주)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상운길 126, 1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경환	063-271-4479		35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01.01 ~ 2024.12.31	○	○	×

경남지역 (경남 전역)	(주)디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752, 412호(석동, 아리온시네마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진원	055-299-4479		35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01.01 ~ 2024.12.31	○	○	×
대구경북서부지역 (대구 전역, 경북 구미시, 경산시, 안동시, 영주시, 칠곡군 등)	선미(주)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금호로 148-100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칠모	053-644-5829		29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01.01 ~ 2024.12.31	○	○	×
울산경북동부지역 (울산 전역, 경북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울진군, 영덕군, 청송군, 영양군, 울릉군)	(주)새늘애프씨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로 110-3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정영주	054-232-5522		20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01.01 ~ 2024.12.31	○	○	×
부산지역 (부산 전역)	(주)창수식품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 394번길 74, 1층 (대저1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김판순	051-941-4492		29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01.01 ~ 2024.12.31	○	○	×
제주지역 (제주 전역)	(주)제주큰푸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로 172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선호	(비공개)		2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01.01 ~ 2024.12.31	○	○	×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봉구스밥버거]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9]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단위 : 천 원, 부가세 미포함)

구 분	수 단	기 간	지출 비용			비 고
			합 계	가맹본부	가맹점	
총계	해당없음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 소	전화번호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1588-2588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금 예치 시 필요서류	
본인 예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맹금 예치신청서 1부(가맹본부에서 교부)</li><li>- 가맹본부와 계약한 프랜차이즈 계약서</li><li>- 대표자 실명확인증표(신분증)</li></ul>
대리인 예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맹금 예치신청서 1부(가맹본부에서 교부)</li><li>- 가맹본부와 계약한 프랜차이즈 계약서</li><li>- 대표자 실명확인증표(신분증)</li><li>-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3개월이내발급분)</li><li>- 위임장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상 인감과 동일한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가맹금 예치 관련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li><li>-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li></ul>
가맹금 예치 절차	

영업창구 이용	① 가맹계약 체결 ② 기업은행 방문 ③ 가맹금 예치신청서를 준비서류와 함께 접수 ④ 가맹금 예치용 계좌번호 수취 후 입금 ⑤ 가맹금 예치확인서 교부 받아 보관
---------	--

기업은행 계좌가 없어도 예치가맹금의 예치가 가능합니다.

귀하는 또한 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기업은행과 가맹금예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봉구스밥버거]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 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총 계	[ 7,150 ]				
가입비	5,500	계약 체결일 익일까지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만 반환
교육비	1,650	계약 체결일 익일까지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 시작일 이후 반환 불가	

2) 계약이행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 원, 부가세 없음)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 고
총 계	[ 3,000 ]			
계약이행 보증금	3,000	계약 체결일 익일까지	가맹금 및 상표사용료(로열티)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계약종료/해지 시 가맹본부 지식재산권의 무단사용, 잔존 채무금, 철거·원상회복비용 미지급 등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단, 계약이행보증금은 부가세 없음))

구 분	금 액
총 계	[10,150]
가입비	5,500
교육비	1,650
계약이행보증금	3,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지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8평 $(26.4\text{m}^2)$ 기준)	면적 33m <sup>2</sup> 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 고
총 계		[29,950~30,050]	[3,744~3,756]			최초 공급 상품 비용에 따라 총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방기기 (집기)	가맹점사업자 자체 구매	7,040	880	자율		물품 추가 시, 추가요금 발생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가맹점사업자 자체 시공	13,200	1,650	자율		26.4m <sup>2</sup> 기준 (3.3m <sup>2</sup> 늘어날 때마다 1,650천원 추가부담)

사인물 (간판 및 홍보물)	가맹점사업자 자체 시공	6,490	811	자율		전면 4m 기준 (1m 늘어날 때마다 70천원 추가부담)
기타	협력업체 및 협력업체	1,320		오픈 1일 전	설치 3일 이전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각 지사	1,900~2,000		발주 시	배송 1일 전 오전 11시 30분까지	가맹점사업자 직접 발주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부분에서 외부공사, 전기승압, 닉트시설, 외부샷시, 가스설비, 화장실, 냉장고(추가), 철거, 간판벽면 및 기둥공사, 소방시설 비용, 야간공사, 냉난방, 기본 컨셉 외 옵션, 출장비, 기타 추가 공사는 별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후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섭외한 시공 업체로부터 별도로 안내 받아야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섭외한 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지불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직접 설치·구매하여야 하며, 설치·구매 품목 내역은 계약체결 시 당사가 제공해 드립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을 통한 알선을 하지 않고, 가맹희망자가 직접 입지를 물색하게 하고 있으며 가맹점의 입지 선정에 대하여 가맹희망자가 책임을 집니다. 당사는 이러한 입지가 당사가 정한 규정의 적합여부에 대해 심사 후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당사에서 승인한 입지에 대해, 당사에서는 매출이나 영업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으며, 매출이나 수익은 가맹희망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맹희망자는 매출/임차료 등에 대한 적합성과 해당 입지가 법적/구조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p>※ 가맹본부가 정한 규정의 적합여부에 대해 심사 후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p> <p>가맹희망자 상담 접수 → 가맹희망자 입지 확인 후 담당자 전달 → 지도/사진,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승인여부 결정, 통보 → 가맹희망자 최종결정(점포계약 최종의사 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집니다.)</p> <p>※ 가맹본부 승인여부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기존 [봉구스밥버거] 점포와의 상권중복 여부</li><li>2) 점포의 전용면적 적합성(최소 점포 기준 <math>26.4m^2</math> 이상이며, 점포 환경에 따라 최소 기준 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li><li>3) [봉구스밥버거] 브랜드와의 적합성 판단</li></ol>

점포에 대한 최종의사 결정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점포에 대한 계약과 기타 건물주와의 계약 등은 가맹희망자 본인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가맹계약과는 별개입니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당사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상권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인근 가맹점의 영업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점포 인허가 사항은 가맹희망자에 의해 진행됩니다.

정화조와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기본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설치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가맹희망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일 것	가맹본부의 경영마인드 부합 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19세 이상일 것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일 것
종업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용모 단정할 것,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일 것	미성년자 채용 시, 부모님동의서 필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일 것 용모 단정할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기타1]은 초기 오픈 물품으로써 기타 비용 납부 시 가맹본부에서 제공합니다. 단, 가  
맹점 운영 중에 추가적으로 구입할 경우 지정업체를 통해 개별 주문하여야 합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상표사용료 (로열티)	(주)부자이웃	월 110	전월 25일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및 가맹점 관리비용으로 반환되지 않음	로열티는 로열티가상계좌 또는 물류 전용 가상계좌에 선 입금하며, 매월 25일 차감 ex) 2월부 로열티 : 1월 25일 차감
광고·판촉 분담금	(주)부자이웃	광고 시행 내역에 따라 변동	광고 시행 내역에 따라 변동		광고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교육훈련비	(주)부자이웃	기본이론교육- 무료 특수사항 (전문강사초빙, 워크샵 등)- 별도비용	교육 실시 6일전	교육 실시 5일전	교육 개시 후 반환 불가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교육 필요 시 진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주)부자이웃 또는 시공업체	가맹부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보수비용	미지정	공사견적				교체 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가맹부부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주)부자이웃 또는 시공업체	가맹부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POS 사용료	협력업체 / 협력업체	카드승인건수 에 따라 차등 발생/업체별 사용요금 상이	매월 약정일		시스템 관리비로 반환되지 않음	
주문 증개 플랫폼	협력업체	주문 건 수에 따라 수수료 상이		주문 결제 취소 시		
지연이자	(주)부자이웃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가맹부부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와 지역사무소(이하 "지사"라 한다)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와 지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와 지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계약연장 또는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총 계	[ 4,950 ]				
갱신수수료	3,300	계약 체결일 익일까지	반환되지 않음	재계약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계약연장 또는 재계약 시
교육비	1,650	계약 체결일 익일까지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 시작일 이후 반환 불가	추가교육 필요 시
점포 이전비	협의하여 분담	점포 이전 후 10일 이내	점포 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점포이전 합의 시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봉구스밥버거]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입비와 계약이행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시 가맹본부에게 가맹종료이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등록(114 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을 받을 때까지는 상호, 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 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매뉴얼 등)와 가맹본부의 특허 상품(밥틀 등)을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외부로 유출할 경우 가맹본부는 법적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물품의 파·오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공급받은 물품의 일부를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반품할 수 있습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메뉴의 표준화를 통해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어 고객이 언제 어느 매장을 가도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시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봉구스밥버거]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위 표의 거래상대방의 지사는 가맹점을 관리하는 각 지역사무소를 말합니다.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품목이 많은 관계로 "외 몇 종"으로 기재하였으며 초도에 관한 품목은 [별지2]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그 외 품목은 [별지3]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위 지사는 가맹점을 관리하는 각 지역사무소를 말합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봉구스밥버거]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였습니다.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명 칭	관 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 고
네네치킨서울북부지사/정순덕	배우자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주)혜이식품금왕지점/현광식	임원(대표이사)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주)혜이식품음성지점/현광식	임원(대표이사)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주)혜이식품음성지점/현광식	임원(대표이사)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총 계			(비공개)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기본 메뉴	봉구스밥버거	원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2023.12.31 기준
	치즈밥버거		
	햄밥버거		
	햄치즈밥버거		
	해봉이밥버거		
	봉순이밥버거		
	쏘야밥버거		
	오므라이스밥버거		
	에햄밥버거		
	바삭멸치밥버거		
	맛있새우밥버거		
	추억의도시락밥버거		
닭 메뉴	닭갈비밥버거		
	치즈닭갈비밥버거		

	칠리치킨밥버거		
	치킨마요밥버거		
	양념치킨밥버거		
돼지 메뉴	제육밥버거		
	치즈제육밥버거		
	김치제육밥버거		
	치즈떡갈비밥버거		
	김치떡갈비밥버거		
	마요떡갈비밥버거		
	통살돈까스밥버거		
	통살돈까스마요밥버거		
	불족밥버거		
	돼지불백쌈밥버거		
소 메뉴	소불고기밥버거		
	청양불고기밥버거		
	김치불고기밥버거		
	매콤마요소불고기밥버거		
	소고기고추장밥버거		
프리미엄 메뉴	봉구킹		
	봉구퀸		
	몬스터봉구		
컵밥 메뉴	점보치킨마요컵밥		
	고기3종컵밥		
	깻잎마요소불고기컵밥		
	매콤제육닭갈비컵밥		
	소고기봉된장컵밥		
	돼불에햄컵밥		
	데리야끼봉구컵밥		
토핑 메뉴	볶음김치 추가		
	햄 추가		
	참치마요 추가		
	청양고추 추가		
	모듬야채 추가		
	치즈 추가		

	계란후라이 추가			
	멸치볶음 추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가격 통보 방법	비고
기본 메뉴	봉구스밥버거	3,000	홈페이지 공지 2023.12.31 기준
	치즈밥버거	3,500	
	햄밥버거	3,800	
	햄치즈밥버거	4,300	
	해봉이밥버거	4,200	
	봉순이밥버거	3,700	
	쏘야밥버거	3,200	
	오므라이스밥버거	3,500	
	에햄밥버거	3,800	
	바삭멸치밥버거	4,000	
	맛있새우밥버거	4,500	

	추억의도시락밥버거	5,000		
닭 메뉴	닭갈비밥버거	3,500		
	치즈닭갈비밥버거	4,000		
	칠리치킨밥버거	4,000		
	치킨마요밥버거	4,200		
	양념치킨밥버거	4,500		
돼지 메뉴	제육밥버거	4,000		
	치즈제육밥버거	4,500		
	김치제육밥버거	4,800		
	치즈떡갈비밥버거	3,500		
	김치떡갈비밥버거	3,800		
	마요떡갈비밥버거	4,000		
	통살돈까스밥버거	4,500		
	통살돈까스마요밥버거	5,500		
	불족밥버거	5,500		
	돼지불백쌈밥버거	3,500		
소 메뉴	소불고기밥버거	5,000		
	청양불고기밥버거	5,500		
	김치불고기밥버거	5,800		
	매콤마요소불고기밥버거	6,000		
	소고기고추장밥버거	5,500		
프리미엄 메뉴	봉구킹	6,500		
	봉구퀸	6,500		
	몬스터봉구	6,500		
컵밥 메뉴	점보치킨마요컵밥	5,200		
	고기3종컵밥	5,500		
	깻잎마요소불고기컵밥	6,000		
	매콤제육닭갈비컵밥	4,800		
	소고기봉된장컵밥	4,800		
	돼불에햄컵밥	5,200		
	데리야끼봉구컵밥	5,200		
토핑 메뉴	볶음김치 추가	800		
	햄 추가	800		
	참치마요 추가	1,000		

청양고추 추가	500		
모듬야채 추가	300		
치즈 추가	500		
계란후라이 추가	1,000		
멸치볶음 추가	8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  
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  
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밥버거를 판매하는 업종	봉구스밥버거	해당없음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지역: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로부터 직경 600m(반경 300m)</li> <li>서울 외 지역: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로부터 직경 800m(반경 400m)</li> <li>해당 범위 내 특수상권 존재 시 그 지역을</li> </ul>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제외한 나머지를 영업지역으로 함	
--	-------------------	--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내 상가,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 상권을 말합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가맹부부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봉구스밥버거'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 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 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봉구스밥버거]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③)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5)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6)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7)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8)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미사상 문제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제2항제1호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제2항제2호
가맹점 유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19조제2항제3호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19조제2항제3호
【복구스밥버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19조제2항제3호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주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9조제2항제3호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영업표지의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제1호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20조제1항제2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과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① 인·허가 취득 ② 물품의 조달과 관리 ③ 거래상대방에 따른 물품판매의 제한 ④ 메뉴판매의 제한 ⑤ 가격결정의 제한 ⑥ 영업시간 및 일수의 제한 ⑦ 유니폼 착용 ⑧ 광고 및 판매의 제한 ⑨ 경업금지 ⑩ 상품공급의 중단 ⑪ 상표사용료(로열티)납입 ⑫ 점포환경개선에 대한 비용	제20조제1항제3호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20조제1항제4호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 및 누설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제5호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20조제1항제6호
가맹점사업자의 요건 변동 시 가맹본부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제20조제1항제7호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제20조제1항제8호
가맹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제20조제1항제9호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체결일 또는 점포이전으로 인한 영업중단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오픈을 하지 않는 경우	제20조제1항제10호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고객 컴플레인이 발생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시정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제20조제1항제11호
가맹점사업자가 제품 및 상품대금을 체불하여 5일 이상 물품 공급 중단 사유가 지속되거나, 월 2회 이상 물품 공급 중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제12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20조제3항제1호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 된 경우	제20조제3항제2호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0조제3항제3호

<p>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유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p> <p>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p> <p>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p> <p>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p>	제20조제3항제4호
<p>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유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제20조제3항제5호
<p>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부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부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p>	제20조제3항제6호
<p>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p>	제20조제3항제7호
<p>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p>	제20조제3항제8호
<p>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p>	제20조제3항제9호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p>계약 수정 사유 발생 → 가맹부부 담당 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p>	<p>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p>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가맹본부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가맹본부 및 과학 지사 검토(양수이 면담 포함, 최소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 체결 → 가입비,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예치 → 양수인 교육 수료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영업관리팀 (1661-5094)

양도 절차 소요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양도양수를 승인하면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에게 기존 계약의 승계 또는 새로운 계약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계약의 승계를 선택하는 경우 잔여계약기간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완전한 새로운 계약을 선택하는 경우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합니다. 양수인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사업자로서 모든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양수인이 완전한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을 양수인의 계약기간으로 지정하고 양수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양도인의 최초 가맹계약체결일(양도인의 이전 승계계약기간 포함)로부터 기산합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당사에 행정적실비,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총 계	[6,300]				
행정적실비	1,650	계약 체결일 익일까지	반환되지 않음	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교육비	1,650	계약 체결일 익일까지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 시작일 이후 반환 불가	
계약이행보증금	3,000	계약 체결일 익일까지	가맹계약 종료 시	가맹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부가세 없음

완전한 새로운 계약을 선택하고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양수인은 가입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신규 가맹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V-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 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 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양도절차와 동일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승인 시, 양도절차와 동일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불가능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 내에서 귀하가 [봉구스밥버거]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가맹본부에서 승인하지 아니한 경업은 금지됩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 고
------------	---------	-----

밥버거를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가맹본부 담당팀 검토(시작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영업관리팀 (1661-5094)
--------------	--	-----------------------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봉구스밥버거]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 고
		문의: 영업관리팀 (1661-5094)
가맹점사업자 자율 (연속2일 이상 휴무 시, 가맹본부 승인 필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가맹본부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는 귀하의 자율이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 고
가맹점사업자 자율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등	보건증 지참 필수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Quality (메뉴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8주일	본사 또는 지사	

Service (서비스)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8주일	본사 또는 지사	
Cleanliness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8주일	본사 또는 지사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영업점을 점검하여 당사가 정한 품질기준 및 관리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여 시정조치 및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물품공급중단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가맹점포(영업장)의 방문 빈도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봉구스밥버거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 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 50% (전체 가맹점에 안분)	광고 진행 시 별도 협의	대중매체 광고 이벤트 행사 등 (전국 행사)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 50% (전체 가맹점에 안분)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가맹점 개별광고	-	전액 부담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 가맹본부의 브랜드 통일성 여부 검토 →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판촉	전국 및 지역 판촉	행사에 따라 달라짐		판촉 진행 시 별도 협의	
	개별 판촉	-	100%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 가맹본부의 브랜드 토익성 여부 검토 →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전체 가맹점에 동일하게 안분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와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계약을 종료한 후 가맹계약서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사항(영업표지 사용중단 및 철거, 매뉴얼 등의 폐기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귀하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10만원)의 지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 또는 귀하가 어느 일방이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당사와 귀하 어느 일방은 그 상대방에게 다음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제3자에게 가맹계약서 제22조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나 당사가 가맹사업을 제3자에게 기존 조건을 그대로 양도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

해지일 직전12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10% x A

---

A: 잔여계약기간 기준: 1년 미만 시 2개월분, 1년 이상 ~ 2년 미만 시 4개월분,  
2년 이상 시 6개월분

---

영업일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오픈 일부터 해지 일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으로 계산

---

\*정상적인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월(月)은 제외하고 15일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한 월(月)만 기준에 산입 한다.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16조 제2항(물품의 조달과 관리) 제1호를 위반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3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16조 제8항을 위반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최초가맹금과 위반일수에 따른 상표사용료(로열티) 및 물류마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18조를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귀하가 누설 및 유출할 경우, 귀하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따릅니다.

당사의 지급 요청일에 귀하가 지체배상금 및 위약벌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당사

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귀하는 연 이율 20%의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다른 계약내용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나 당사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매출감소 등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본사의 과실없이 지사의 과실만 있는 경우 본사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총 계	-	47일 내외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간 제외)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설명,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입구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 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34~31	
가맹계약체결	- 가맹금 예치 안내 - 가맹계약체결	D-30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D-29	
가맹점사업자 인테리어업체 선정	- 투자비 산출 - 도면협의 및 시공 스케줄링 확인	D-27~25	
공사 착수	- 공사 실시	D-25~5	
교육실시	- 메뉴 및 서비스 교육 (공사기간 중 실시)	D-7~4	
영업설비/ 집기 입고	- 냉장고 등 입고 - 그릇 등 입고	D-2	
초도물품 입고	- 유니폼 등 입고 - 식자재 등 입고	D-1	
그랜드오픈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당일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1588-1490, 홈페이지: <https://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점상적이 영업에 협소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 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 (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li> <li>○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li> </ul> <p>&lt;분할지급 시 절차&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li> <li>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li> <li>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li> </ul> </li> </ul>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연약도 포기)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자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가맹점 유역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 방문 →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개선 사항 파악 → 개선사항 발생 시 가맹점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 안내	가맹본부 부담	목의: 영업관리팀 (1661-5094)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 유역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방문 일시, 소요비용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안내 → 가맹점 방문 →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목의: 영업관리팀 (1661-5094)

##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음

##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봉구스밥버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 고
신규 교육 (개점 전)	회사 소개 음식 가공 POS 사용 등 개점 전에 필요한 제반 교육	합숙 실습교육 집단강의 (지정 교육장)	계약체결일부터 가맹점 오픈 전	필수 교육
신메뉴 교육 (개점 후)	신메뉴 제조방법	① 집체교육 ② 담당 지사를 통한 개별 교육 ③ 홈페이지 공지	신메뉴 정식 출시 전	필수 교육
정기교육 및 부정기 교육	운영 방침 및 판매, 서비스 기법 등	① 집체교육 ② 담당 지사를 통한 개별 교육 ③ 홈페이지 공지	교육통지문에 의거 교육 실시	해당 가맹점 필수 교육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봉구스밥버거]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최소시간	비 용	비 고
신규 교육 (개점 전)	4일	1,650	신규, 양수 계약 시 이수
신메뉴 교육 (개점 후)	메뉴에 따라 상이	별도 비용 없음	신메뉴 출시 시, 필수적으로 이수
정기교육 및 부정기 교육	내용에 따라 상이 (실시 1개월 전에 최소시간 공지)	1일 기준 330	교육소집 시 필수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기본 2명(당사자와 직원 1명) 외 다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개점이 연기될 수 있고 귀하께서 교육 불참에 대한 당사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 고
해당 없음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 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 고
해당 없음	

\_\_\_\_\_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_\_\_\_\_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영업관리팀(1661-5094)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mailto: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지2] 주방기기, 인테리어, 사인물, 기타 목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지 3] 원부재료, 상품 목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